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25588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상법 제62조, 민법 제481조, 제485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2558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5. 4. 1 선고 2004나304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강AA)

【피고, 피상고인】 기BABA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곽AB)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5. 4. 1. 선고 2004나30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용보증부대출의 채권자인 원고는 신용보증인인 피고로부터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한국크린테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오CA의 신용불량자 등재사실 및 위 대출에 수반하여 체결된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위반하여 채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양도담보물인 이 사건 기계를 위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읍 ○○리에서 별도 업체인 ○○시 ○○동소재 한동기업의 사업장으로 이전한 사실을 통보받음과 아울러 담보물 철거관리의 요청을 받았고, 한편 한동기업 사업장 내의 일부 기계들에 대하여는 그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집행이 실시되기까지 한 상태임에도 원고가 위 한동기업 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이 사건 기계가 한동기업 사업장 내의 다른 기계들과 섞여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서도 이 사건 기계의 무단 이전이나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기계들이 멸실되었고, 그 멸실된 기계들의 가액이 피고의 잔여 보증채무액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보증채무로부터 면책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공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여 은행과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은 피보증인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된 시설자금에 의하여 당해 시설(기계)을 설치하는 즉시 확정일자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은행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그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였다면, 위 특약의 목적은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인 은행로서는 위 특약에 따라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민법 제485조, 제481조에 따라 그 담보의 상실이나 감소로 말미암아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하에서라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담보보존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달리 이 부분 원심판단에 선관주의의무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